

위 임 장

본인은 2021년 3월 30일에 개최하는 신라젠(주) 제 15기 정기 주주총회(그 속회,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신라젠(주)이 지정하는(이성희, 소재현)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1. 소유주식수 : 주 (기준일: 2020.12.31)
2. 의결권있는주식수 : 주
3. 위임할주식수 : 주
4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(각 의안에 대해 찬반을 표기하여 주십시오.)

부 의 안 건	찬성	반대
제1호 의안 : 제15기 재무제표(별도&연결) 승인의 건		
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		
제4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	신현필	
제4-2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	하경수	
제4-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	양태정	
제4-4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	이춘엽	
제4-5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	신창민	
제4-6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	김철	
제5호 의안 :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		
제5-1호 의안 :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	김철민	

5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 -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4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 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목	지시내용

- ※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임장은 해당 의안의 표결에 있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전자투표와 위임장 교부가 함께 이루어지고 각 의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,
1. 둘 중 어떤 의사를 철회할 것인지를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알려주신다면 이를 반영하겠습니다.
 2. 결의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일과 위임장 교부일 중 뒤에 해당하는 일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.

주 주 명 : (서명 또는 인)
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 위 임 일 자 및 위 임 시 간 : 2021년 월 일 시

